

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14.1.17>

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
(제53조제4항 관련)

1. 평가등록비

내용	금액(1건당)
신기술인증	200만원
기술검증	200만원
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	350만원

2. 평가수수료

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신청인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.

3.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(1건당): 2백만원